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민 생계지원 등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제19조)

건설기계사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지원을 위해 교통수단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 자기광고가 가능하던 것을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로 확대하도록 함

나.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 확대(안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주민 편의 등을 위해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를 영업 중인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 차량 등에서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으로 확대하도록 함

다. 광고물 특례구역의 해제 근거 명확화(안 제21조, 제25조, 제28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정한 광고물 특정구역, 정비시범구역이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 하는 건설기계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덤프트럭”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로 한다.

제2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등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비시범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9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에 해당 업무 안내 또는 정보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안내전광판 및 표시 홍보물

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업무를 수행 중인 차량

나. 도로·교통시설의 정비·점검 업무를 수행 중인 차량

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가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경우

라. 「대중교통법」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이 운행 중인 경우
별표 1 제13호가. 광고물의 종류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3호나. 광고물의 종류란 나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가.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선을 제외한 교통수단
별표 6 제1호 기술능력란 제2호 중 “옥외광고사 2급”을 “옥외광고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 가. ~ 라. (생략) 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덤프트럭(이하 “덤프트럭”이라 한다) 바. (생략) ② (생략)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④ (생략) ⑤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바.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1. ~ 3. (생략) ⑥·⑦ (생략)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 ⑥ (생략) <u><신설></u>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 ⑤ (생략) <u><신설></u>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 ①·②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u>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u>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등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비시범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u>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 8. (생략)

9. 교통법규 위반 단속 또는 도로·교통시설의 정비·점검 업무를 수행 중인 차량에 해당 업무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전광판 및 표시홍보물

10. (생략)

④ ~ ⑦ (생략)

③ -----

--.

1. ~ 8. (현행과 같음)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에 해당 업무 안내 또는 정보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안내전광판 및 표시홍보물
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업무를 수행 중인 차량
나. 도로·교통시설의 정비·점검 업무를 수행 중인 차량
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가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경우
라. 「대중교통법」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이 운행 중인 경우

10.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연 락 처	(044) 205 - 3544